

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

「수산업법」 제14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면허 번호	연장 허가 번호	어업의 종류 (양식방법)	면적 (ha)	어장 위치	면허기간	연장허가 기 간	수산자원 조성금 (천원)	어업권자		비고
								주소	성명	
10288	2018-48	마을어업	24.7	화정 적금	2008.11.28. 2018.11.27.	2018.11.28. 2028.11.27.	-	여수시 화정면 적금리	적금 어촌계	
10294	2018-49	마을어업	30	화정 적금	2008.12.09. 2018.12.08.	2018.12.09. 2028.12.08.	-	여수시 화정면 적금리	적금 어촌계	
11203	2018-50	패류양식 (바닥식)	10	화정 적금	2008.11.30. 2018.11.29.	2018.11.30. 2028.11.29.	-	여수시 화정면 적금리	적금 어촌계	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18. 11. 06.

여 수 시 장

도로 지정(변경) 공고

여수시 남면 연도리 1730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 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구분	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당초	계		18m	4m	75㎡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변경	계		18m	4m	76㎡		
당초	남면 연도리	1728 번지	18m	4m	75㎡	도로대장 참조 (도로면적 변경)	
변경	남면 연도리	1728 번지	18m	4m	76㎡		

※ 도로지정공고(당초) : 여수시 공고 제2018-1822호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11. 6.

여 수 시 장